

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최정순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, 현 지원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위로하고,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액 200퍼센트 이하인 가구(세대)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